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147
----------	------

2019년 11월 27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9년 11월 27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정화 물순환안전국장)

가. 제안이유

-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4.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본 개정안은 소상공인¹⁾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라 함)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시 물재생센터 내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부칙 제2조)

현 행	개 정 안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일</u> 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u>2020년 12월 31일</u> .

- 제로페이란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은행, 민간결제사업자가 협력해 도입하는 QR코드 방식의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를 말하며,
-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결제수수료²⁾가 연매출액 8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맹점은 0%이고 8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신용카드 보다 낮아 부담이 크게 경감됨은 물론, 소비자는 이용금액의 40% 소

1) 규모가 작은 기업 및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를 말하는데,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은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9인 이하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 서비스업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말함.

2)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소상공인 가맹점	일반 가맹점
연 매출액 8억원 이하 : 0% 8억 ~ 12억원 : 0.3% 12억원 초과 : 0.5%	대기업 계열사 가맹점 1.39%, 중소형 가맹점 최고 2.5%

득공제(이에 비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30%)³⁾ 혜택을 받게 됨.

- 제로페이 서비스 개시 이후 가맹점이 확대(2018.12월 14,677개소 → 2019.8월 161,605개소)되고 거래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 당초 서울시 4개년 계획(2019~2022)에서 2019년 서울시가 목표한 제로페이 이용금액은 8조 5,300억원인데 반해 2019년 8월 30일 기준으로 결제금액은 239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0.28%의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표 2] 서울시정 4개년 계획에 따른 제로페이 연차별 목표 (단위 : 억 원)

연도	2019	2020	2021	2022
제로페이 이용금액	85,300	170,601	284,336	426,504

-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지난 제286회 임시회에서 제로페이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시설·프로그램 등의 이용료 감면 및 할인 제도 추진(법무담당관-1493, 2019.1.25.)을 위하여 조례([표 3] 참조)를 본 개정안과 동일한 취지로 2019.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 1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음.

[표 3] 제로페이 활성화 관련 조례 개정 추진 현황

연번	구분	개정대상 조례	감면대상 *	소관부서
1	조례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도시교통실 (주차계획과)
2	조례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장 입장료, 체육시설 개인연습사용료,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3	조례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립청소년수련관 등의 체육시설, 강당 등 사용료 및 예체능, 외국어 등 강습료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3) 공제금액 : (사용액-세전연봉의 25%)×공제율×과표소득 최종세율

연번	구분	개정대상 조례	감면대상 *	소관부서
4	조례	도시공원 조례	서울대공원 입장료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5	조례	영어 및 창의마을 조례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핑 및 서울영어마을 수유·관악캠핑 이용료(숙박, 비숙박)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6	조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서울50플러스캠퍼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및 강당, 교실 등 사용료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7	조례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성발전센터 강좌 수강료 및 보육실 등 이용료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8	조례	서울상상나라 운영 조례	서울상상나라 입장료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9	조례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사용료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10	조례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인재개발원 내 강의·체육시설 사용료	행정국 (인력개발과)
11	조례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립장사시설 사용료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12	조례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한강공원 내 유람선, 체육·휴양시설 등 이용료	한강사업본부
13	조례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회의실, 강당 등 사용료	행정국 (자치행정과)
14	조례	시립과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립과학관 관람료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15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교통문화교육원 교양·취미 프로그램 이용료 및 건강·생활편의 시설 이용료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16	조례	시민청(市民廳) 운영 및 관리 조례	시민청 내 유료 전시·공연 이용료 등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17	조례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임대 및 맞춤형제작 비용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조례가 개정·시행된 2019.5.2.일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116개 시설에 총 114,151건, 약 41억원이 제로페이로 결제되었고, 할 인액은 약 5억원 규모인데, 월별 이용금액을 살펴보면, 5월에 9억 27백만원, 6월에 8억 32백만원, 7월에 10억 36백만원, 8월에 13억 46백만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⁴⁾를 보이고 있음.

4) 자료 : 서울특별시의회, 2019, 2019년도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 분석·평가보고서

[표 4] 제로페이 결제 및 할인실적(2019.5. ~ 8월 기준)

(단위 : 건, 천원)

연번	조례명	시설수	제로페이 결제			제로페이 할인	
			건수	금액	비율	건수	금액
총계		116	114,156	4,140,851	14.6	110,366	500,719
1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27	32,554	3,592,336	23.0	29,281	382,035
2	도시공원 조례	2	61,747	195,186	8.1	61,747	83,651
3	장사등에 관한 조례	3	330	123,118	3.6	370	6,822
4	영어 및 창의마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3	288	49,293	14.1	284	2,490
5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14	733	26,146	1.6	709	1,554
6	교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1	402	17,741	5.7	401	1,846
7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1	930	9,272	1.6	848	2,509
8	한강공원보전및이용에 관한기본조례	8	914	6,973	1.0	914	740
9	물재생시설설치및관리에 관한조례	3	1,388	6,322	12.6	1,387	638
10	시립과학관관리및운영조례	1	5,616	6,101	14.0	5,616	2,614
11	인재개발원시설사용료 징수조례	4	237	5,090	6.0	119	67
12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6	482	3,394	0.5	471	347
13	여성관련시설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	1	77	2,530	7.3	6	2
14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1	18	1,625	5.1	18	644
15	장애인등을위한보조기기지원및 활용촉진에관한조례	4	14	178	18.4	14	18
16	공공시설의유휴공간개발및사용에관한조례	4	-	-	-	-	-
17	가족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8	-	-	-	-	-
18	장년층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4	-	-	-	-	-
19	자유시민대학운영에관한 규칙	1	15	381	19.3	14	42
20	보라매병원주차장관리지침	1	10	20	0.0	8	1
21	조례 개정 없이 할인시행	19	8,401	95,145	4.3	8,159	14,699

○ 이에 서울시는 물재생시설 내 유료 체육시설(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

설(테니스장, 탁구장,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현행 201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사용료를 10% 범위 내에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제로페이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표 5> 참조), 전체 이용건수(7,487건) 대비 제로페이 이용률은 22%(1,649건)이고, 감면에 따른 이용료 손실액은 약 687만 4천원 규모로 서울시 재정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이용현황(2019.5월 ~ 9월)

(단위 : 건수)

구분	전체 이용	제로페이 미이용	제로페이 이용
체육시설	7,487	5,838	1,649(22%)

※ 감면손실액 산출 = (사업수입×40%(제로페이 목표 이용자))×10%(이용료 감면)
 = (171,850천원×40%)×10% = 6,874천원

- 한편, 서울시는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혜택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45.3%(할인혜택 만족도 : 매우만족(13.5%), 만족(31.8%), 보통(38%.0), 불만족(13.5%), 매우 불만족(3.1%))로 높은 편이고,
- 공공시설의 제로페이 결제 시스템이 9월 따릉이 등 61개소, 10월 공공예약서비스 이용시설 81개소, 12월 8개소 등 순차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 효과가 더욱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 제로페이 감면혜택 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당초,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제286회 임시회 중 안전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 물재생시설 내 체육시설 이용료 제로페이 결제에 따른 10% 감면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약 6개월 정도의 시행기간만으로 충분한 제로페이 가입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한 바가 있음.

- 또한, 신용카드 15% 소득공제에 대한 일몰제가 9회에 걸쳐 연장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경우 다년도에 걸쳐 시행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 중단 시 제로페이 이용시민의 불만제기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 개정안과 같이 한시적으로 감면혜택을 연장할 필요성은 있다 사료됨.
- 다만, 공공시설 제로페이 할인혜택의 궁극적인 목표가 소상공인을 위한 제로페이 이용 저변화라는 점에서 가입자 입장에서의 결제 편의성 개선, 자발적 가입 유도, 실질적 혜택 극대화 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공공시설 제로페이 감면혜택이 예산의 간접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음 일몰 시점에서 연장에 대한 필요성 논의가 다시 대두될 것이라는 것을 감안해야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9.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10.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47
----------	------

제출년월일 : 2019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9. 25. ~ 10. 15.) 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7120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중 “2019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20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u>2019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 < 제7120호, 2019. 5. 2.></p> <p>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 ----- ----- <u>2020년 12월 31일</u>-----.</p>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5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소상공인간편결제시스템 결제 할인(10%)을 부칙 제2조에서 2020년 말 까지 연장함에 따라 세외수입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2018년 사용수익

(단위:천원)

구 분	이용인원	운영수지	징수금액	지출금액	비고(지출내역)
체육시설	68,419	2,218	171,850	169,632	-인건비 155,465 -경비 14,167

- 2019.5월~9월 제로페이 할인건수

(단위:건수)

구 분	전체 이용	제로페이 미이용	제로페이 이용	비 고
체육시설	7,487	5,838	1,649(22%)	

- 감면손실액 산출 = (사업수입×40%(제로페이 목표 이용자))×10%(이용료 감면)
= (171,850천원×40%)×10% = 6,874천원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과 박준현 (02-2133-3832)